

9.27
여

성폭력 특별법 제정

친고제 폐지, 공소시효 대폭 연장돼야

9일 <법추진위>가 마련한 정당초청간담회서 지적

장간 등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 신고없이도 수사 처벌하는 친고제 폐지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는 등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해지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한국 여성의 전화, 김부남 사건 대책위, 대구 여성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 입법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등 정당인 초청 간담회를 갖고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미경 총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현행 법규정과 형사 사법 처리 과정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 중심의 재판 운영을 위한 친고제 폐지나 공소시효 조정은 물론 성폭력 정도나 유형에 따른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친고제



입법 분위기 조성도 시급

규정은 피해 당사자의 ‘직접 신고’로만 수사하고 고소를 취하할 경우는 성폭행법이 처벌되지 않음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현행법이 정조에 관한 법으로 국한되어 강간을 당한 여성들로 하여금 순결을 잃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더욱이 최근 어린이 성폭행이 급증하는 추세

에서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신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피해 당사자만이 신고하게 하는 친고제 폐지는 절실하다고.

한편 현행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그쳐 성폭행 피해자들이 제3자에게 폭행 사실을 고백하거나 어린이 강간시에도 자신이 당한 일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 뒤늦게라도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현행법은 또 16세 이하 어린이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부모가 용기를 내 고소해도 검찰은 어린이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령 제한을 없애고 피해자 진술 우선주의가 채택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성폭력 특별법 입법시안을 발표한 최일숙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를 법적으로 돕는 공공기관으로 △성폭력 특별 위원회와 성폭력 교도소 신설, 성폭력 범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마련을 주장.

이날 정당인 초청 간담회에는 정옥순 민자당 여성국장, 박영숙 민주당 의원, 지은희 민중당 연수원장 등이 참석, “입법의 필요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말하고 일차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입법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